



#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양승현 연구위원

재산종합보험의 재물손해담보 부분에 관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 등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함께 명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가능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은 계약자별 맞춤형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를 기재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반면,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재물보험은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므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 쟁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최근 고등법원에서 이 쟁점과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부정설로 보이는 설시를 한 판결이 나와 향후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 공장, 건물 등의 부동산, 재고 등 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물이 화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종합보험<sup>1)</sup>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소유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며, 동시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취득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sup>2)</sup>하므로, 통상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먼저 손해를 보상한 후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는 제3자가 보험목적물의 임차인이거나, 보험목적물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인 경우 등 관련자(이하 “임차인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대비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 등이 중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낭비이며 손해라는 인식에서 비롯됨<sup>3)</sup>

1) 재산종합보험은 재물손해담보(Property All Risk Cover), 기계담보(Mechanical Breakdown Cover), 휴업손실담보(Business Interruption Cover), 일반배상책임담보(General Liability Cover)의 4부문으로 구성되나, 본고의 논의는 재물손해담보에 관한 것임

2)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 대안으로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임차인 등을 함께 명기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보험회사의 임차인 등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sup>4)</sup>

-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sup>5)</sup>
- 약관이 정형화된 화재보험(Ready-made Policy)과 달리 재산종합보험은 계약자별 맞춤형(Tailor-made Policy)이라는 특성상 피보험자 기재방법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물보험은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소유이익이 없는 임차인 등은 보험증권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sup>6)</sup>

- 대법원은 상가운영위원회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종합보험 재산손해담보 부문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이익을 소유이익으로 보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피보험자성을 부인<sup>7)</sup>한 바 있음
  - 또한 재물보험에서 임차인 등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기재하거나 피보험자 기재 없이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을 위한 재산보험”이라고 판시함<sup>8)</sup>
- 아울러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병기하여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이 우려된다는 것 또한 근거로 함
  - 첫째, 임차인이 피보험자의 법률 및 약관규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둘째, 임차인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상품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음
  - 셋째, 구상권 청구기회 상실로 보험사의 환입보험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상승요인이 될 것임

■ 본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의는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소유이익으로 제한되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현재까지 이 논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음

- 부정론이 근거로 드는 기존의 판례사안들은 본고의 검토대상과는 사실관계 구성에 차이가 있음

3) 안대화(2015. 4),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 추가에 대한 제언」, 『Risk & Insurance』, 통권 제119호, p. 39 참조

4) 상동

5) 단,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적용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등)

6) 안대화, 위 기고문, pp. 42~44 참조

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참조

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05987 판결 등

- 기존 사안은 재물보험임에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인 임차인 등의 법적 책임과 보험목적물 소유자의 소유이익 중 어느 것을 피보험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임
- 본고의 검토대상과 같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상권 청구 회피 목적으로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경우 임차인 등의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음
- 또한 기존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안의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판단<sup>9)</sup>하였을 뿐, 소유이익만이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지는 않았음

■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학계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계약의 중심 요소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관념 자체는 거래의 통념에 합치되도록 탄력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sup>10)</sup>

-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도,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자로서의 이익, 임차인으로서의 이익, 저당권자로서의 이익 등 다양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 이기는 하나, 반드시 소유이익을 가진 자만이 재물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움
- 우리나라 재산종합보험 약관이 기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 등에서는 많은 경우 소유이익 뿐 아니라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또한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봄<sup>11)</sup>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여 임차인 등을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함께 기재하고 이로써 임차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의욕한대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등법원에서 공장 소유자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에 “수급인”이 피보험자로 함께 기재된 사안에서, 공장 부지 내에서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의 피보험자성을 부인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음<sup>12)</sup>

9)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이 사건과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10) 정동윤·손주찬(2015), 『주석상법: 보험(1)』, 제638조~제682조, pp. 361~363; 양승규(2005), 『보험법』, p. 196 등 참조

11) Petrofina (UK) Ltd. and Others v. Magnaload Ltd. and Others(1983, 영국), Commonwealth Construction Co., Ltd v. Imperial Oil Ltd.(1976, 캐나다) 등은 ‘재물보험인 공사보험에서 (소유자가 아닌) 하청업자들이 공사목적물에 갖는 피보험이익은 과실이 있는 경우 그들이 부담하게 될 책임에서 도출된다 판시함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2002821 판결 참조

- 판결문은 이 사안 역시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전제한 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해당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의욕한 바 없다는 취지로 판단
    -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상 피보험자란에 수급인이 기재되었고, 보험회사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복수 피보험자 조항(Multiple Insured Clause)이 존재했음
    - 그러나 고등법원은 구상권 포기 대가로 보험료가 증액된 사정이 없고, 수급인의 이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는 등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함
  - 위 판결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피보험자성을 부인하였고, 법리적으로 재물보험에서 소유이익이 없는 임차인이나 수급인 등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실시 내용 중 “재산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소유이익을 가지는 자로 한정”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본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법리가 판례로서 정립된다면 보험회사들의 계약인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됨 [kiri](#)